

증명서를 발급해 주며, 그 서류의 사망 원인 난에 '검시관 사인 조사중' 이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사망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사망 증명서 발급 신청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검시관에 의해 사인이 규명되면 내무성의 관련부서에서 사망 원인 난을 추가로 기입하게 되며, 잠정 사망 증명서를 반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사망원인이 기록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매스컴

갑작스런 사망이 있었을 경우, 매스컴에서 보도를 위해 유가족에게 접근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

피해자 지원단체 (Victim Support)는 뉴질랜드 전역에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나 심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24시간 언제라도 실질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개인적인 지원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0800 VICTIM (0800 842 846)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지원단체
(Victim Support)를
찾거나, www.victimsupport.org.nz을 방문해
보십시오.

유용한 전화번호

피해자 지원단체 (Victim Support):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0800 VICTIM (0800 842 846)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지원단체 (Victim Support)를 찾거나, www.victimsupport.org.nz을 방문해 보십시오.

뉴질랜드 경찰: 가까운 경찰서의 연락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인명상호별 전화번호부 (White Pages)의 정부기관 편을 참조하거나, www.police.govt.nz을 방문해 보십시오.

뉴질랜드 검시관청

오클랜드	(09) 916 9419
크라이스트처치	(03) 353 0444
더니든	(03) 470 1147
해밀턴	(07) 834 1756
헤이스팅스	(06) 870 3116
파머스톤 노스	(06) 350 0083
로토루아	(07) 343 1021
웰링턴	(04) 910 4487
황가레이	(09) 430 4307
전국 본부	(04) 910 4487
수석 검시관 사무실	(09) 916 9151



www.justice.govt.nz/coroners

© Crown Copyright 2010



Item code: JUSCS0018

갑작스런 사망이 있었을 때

사망 후 48 시간 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나?



갑작스런 사망

갑작스런 사망이 있었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인불명의 사망, 자살, 자연사가 아닌 사망, 타살의 경우;
-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
- 진료, 수술, 치과 시술 중에 사망했거나, 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출산 중, 또는 출산 때문에 사망한 경우;
- 고인이 구급 또는 보호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시관(Coroner)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8 시간 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나?

검시관이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고인의 유해를 안전한 곳(병원 영안실이나 장의사)에 안치하게 됩니다.

검시관 대리인(보통 경찰관)이 사망과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검시관은 사망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원 확인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사망 당시에 의료인이 입회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고인을 아는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만한 개인소지품, 치과기록, 유전자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는 사람이 증인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근친자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검

부검을 때로는 해부라 부릅니다. 법의관(전문의)이 시체 내외부를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사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병원 영안실에서 실시합니다. 부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영안실이 병원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신을 인근의 큰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도 있습니다.

검시 전체 과정을 통해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며, 고인의 시신을 다룰 때는 예의를 갖추어 주의를 다하게 됩니다.

부검 거부

직계 가족은 부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뉴질랜드 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
- 부검이 지체될 경우, 법의관의 사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검시관이 판단하여 부검을 즉시 명령한 경우;

부검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시관의 결정을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검시관에게 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부검 결정을 통보 받았을 때 검시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거부 신청 사유를 검시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Victim Suppor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요구 사항

뉴질랜드에서 사망한 경우, 관련자의 신앙적, 문화적인 요구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해 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요구 사항을 가능한 신속히 검시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인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사망 사건별로 사인을 규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시관 대리인(보통 경찰)에게 문의하면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 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뉴질랜드 검시관청(Coronial Services of NZ)이나 경찰서의 사인조사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지품

경찰이나 의료인이 사망 당시에 수거한 개인소지품(예: 장신구, 지갑, 의류)을 보호자에게 돌려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또는 장의사에서 훗날에 가족에게 개인 소지품을 돌려 줍니다.

어떤 물품은 과학수사 또는 경찰의 추가 수사자료로 보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훗날 가족에게 돌려 줍니다.

사망 증명서 발급

관련 부서(내무성의 출생, 사망, 혼인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한 후에는 사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잠정 사망

